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5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들은” 을 “따른 등록신청자료” 로, “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구성하고 당사자” 를 “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의 구성원은 상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할 때” 로, “경우에는” 을 “경우” 로, “대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을 “대해서는 협의체를 별도로”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 을 “협의체 구성원들”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당사자들의 합의” 를 “합의” 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분쟁 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법 제16조의2 각 호에 따른 비용분담 및 비용계상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 조정의 신청인 및 상대방은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요청서에는 자료의 제출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제20조의3(소유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진행된 분쟁 조정 절차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

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유예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예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출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결과 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서 또는 해임서” 를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서”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류” 를 “서류(선임의 경우만 해당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신청인” 을 “신고인” 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2제2항” 을 “법 제45조의2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효력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업무효력 승계 사실 신고서에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11 제1호사목 구분란 중 “법 제45조의2제2항” 을 “법 제45조의2제3항” 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ce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 물질 식별번호)			
공동제출 및 공동 [] 분류·표시에 관한 자료 []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 유해성에 관한 활용 자료 종류 자료 [] 시험계획서 [] 위해성에 관한 자료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신청 사유	[] 공동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 비용의 부담 및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제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불합리한 대가 요구 또는 거부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사용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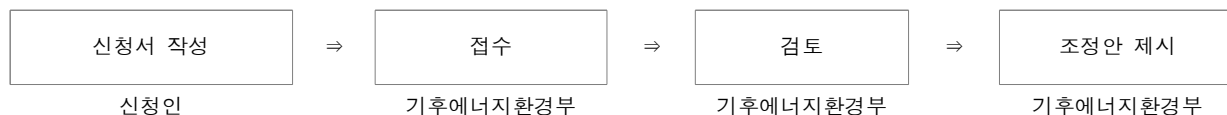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공동제출 및 공동활용 자료 종류”란은 분쟁 조정이 필요한 자료를 선택합니다.
2. “구체적 사유”란은 분쟁이 발생한 주요 쟁점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제 호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서

관계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화학 물질 식별번호)		
자료제출 기한		

자료제출 내용

제출대상 자료의 명칭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공동활용 자료 종류	[]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시험항목:) [] 유해성에 관한 자료 (시험항목:)	
	유예기간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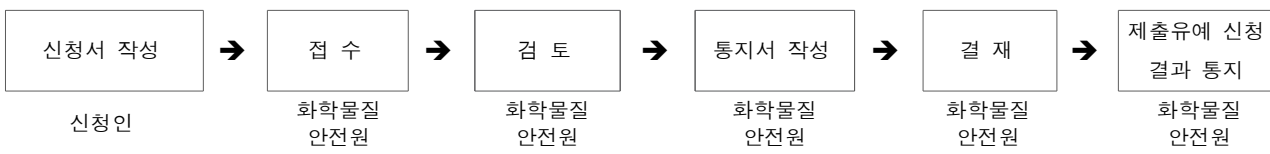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진행된 분쟁 조정 절차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입사실 신고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입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공동활용 자료 종류”란의 시험항목은 제출유예를 신청하려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험항목을 기재합니다.
- “유예기간”란은 희망하는 기간(해당 물질의 화학물질등록 신청일부터 1년 이내 범위)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 제출유예 등록신청자료 [] 제출유예 기간 연 신청결과 통지서 장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통지내용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공동활용 자료 종류	[]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시험항목:) [] 유해성에 관한 자료 (시험항목:)
	유예 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된 유예 기간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 제2항, [] 제3항, [] 제4항에 따라 귀하의 등록신청자료 [] 제출유예, [] 승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 승인, [] 불승인 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출유예 내용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공동활용 자료 종류	<input type="checkbox"/>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시험항목:) <input type="checkbox"/> 유해성에 관한 자료 (시험항목:)	
	이전 유예 기간	년 월 일까지	
신청내용	연장 유예 기간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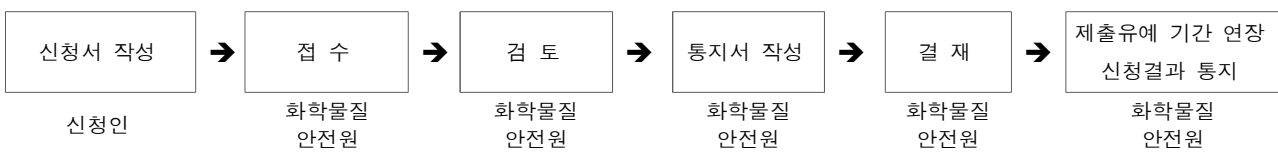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출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결과 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3.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연장 유예 기간”란에는 희망하는 기간(이전 유예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범위)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 해임 업무효력 승계 사실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선임 대상자 (업무효력 승계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해임 대상자 (업무효력 피승계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선임번호		
국외 제조 (생산)자	상호(명칭)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최종 수출자	상호(명칭)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관리번호 (업무효력 승계의 경우만 작성)		
	제품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에 따라
 제4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3제4항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국외 제조(생산)자는 수입자를 같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
 해임
 위 선임 대상자(업무효력 승계인)는 해임 대상자(업무효력 피승계인)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선임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선임 또는 해임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업무효력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업무효력 승계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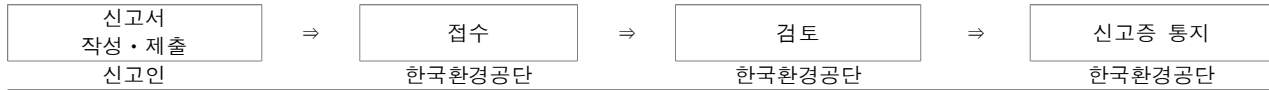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최종 수출자”란은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입(해입) 사실 신고증에 최종 수출자가 기재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2. “화학물질 정보”란은 복수의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관리번호”란은 업무효력 승계의 경우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조정의 절차 및 방법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